

● 제33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12)
검 토 보 고 서**

2025. 9.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아이수루 의원 발의 】

의안번호 2912

I. 개정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아이수루 의원 (찬성 13명)

나. 제 안 일 : 2025. 8. 8.

다. 회 부 일 : 2025. 8.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24년 기준,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8명으로서 혼인의 감소 및 혼인 후 사회적 환경 및 각종 여건 등의 사유로 출산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중요성과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의 필요성 절실
- 특히,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에 있어, 다자녀 가족의 일환인 임신부 및 유아동의 축제, 행사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 키움 배려문화확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선입장제도’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중요성과 지속적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나. 주요내용

- 임신부 및 유아동 등의 우선입장제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 7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2025.8.20.~8.24.) 결과 : 의견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과 그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충청남도를 포함해 3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임산부 및 유아동¹⁾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 관련 광역단위 입법현황>

(2025.8.28. 기준)

구분	조례명	입법현황
충남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4.12.3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5.7.14.)
경북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5.5.19.)

2 주요사항 검토

□ 우선입장제 (안 제7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시장이 서울특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

1)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에 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가족을 우선 입장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현행 조례의 제7조의3에 신설하고자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3(우선입장제)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임산부 및 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과 그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우선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하게 할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선입장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2024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8²⁾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³⁾」,

2) 통계청,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3)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⁴⁾」 등을 통해 서울시가 주관·주최하는 일부 행사에 대해 임산부가 우선입장 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음.

- 집행부서(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축제는 총 183건으로 그 중 10건의 행사에 임산부 등을 위한 우선입장제를 실시하였음.
- 개정안은 임산부 뿐만 아니라 유아동과 그 동반가족으로 서울시 주최·주관 축제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사회·문화 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양육 친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 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서는 축제·행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2조(정의)에 축제·행사에 대해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서 의견>

제2조(정의) 10. “축제·행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행사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과 「서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다. 그 밖에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 그러나 집행부서가 제안한 수정의견의 정의규정 제10호 ‘다목’에서 ‘그 밖에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다시 두고 있어 수정의견에 따라 축제·행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 향후 개정 조문을 근거로 집행부서에서는 적용 가능한 서울시 주최·주관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 행사 특성에 맞는 우선 입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집행기관 의견(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붙임)

- 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서는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축제·행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2조에 축제·행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임산부 또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 서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에 우선 입장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 가족이 문화생활을 더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적용 가능한 서울시 주최·주관 행사를 적극 발굴하고, 각 행사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우선 입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종훈	02-2180-8148

붙임	조례안 관련 집행부서 의견
----	----------------

의안번호291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아이수루 의원(1인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해당없음		
주요 내용	〈개정 필요성〉 ○ ‘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주요 입법 요지〉 ○ 임산부 및 유아동 등의 우선입장제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3)				
	부검토의견 원안동의() / 수정요청(○) / 보류요청()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를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함. ○ 임산부·유아동의 우선입장과 관련한 조례는 경북, 충남, 세종, 논산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개별조례로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 서울시도 저출생 극복의지를 정책적으로 담은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동반 아동을 위한 정책도 확대 중에 있어 편안한 외출환경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축제·행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2조(정의) 제10호에 용어의 뜻을 추가(수정가결)				
	제2조(정의) 10. “축제·행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행사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다. 그 밖에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담당부서	저출생담당관	팀장	최인성(☎2133-5007)	담당	이광훈(☎2133-5010)